#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80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 김소희 · 곽규택 · 이헌승

최수진 · 김선교 · 김예지

최은석 • 백종헌 • 우재준

조경태 · 김형동 · 김대식

김상훈 · 김성원 · 서범수

김위상 • 주호영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 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 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을 다음 각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
-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 ·도교육청평가
-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평가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① ~ ④ (생 략)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
	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의 특정평가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u>의 합동평가</u>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u>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u>
	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평
	<u> </u>

(5)	(생	략)
(U)	\ \	1/

⑤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⑦</u>
<u>제</u> 6
<u>항</u>
<u>®</u>
<u>제6항</u>

로 정한다.